

목동 237-45번지일대 목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
중랑구 목동 237-45번지 일대 목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4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

1.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
추진위원회 명칭	구역 위치	승인일	승인취소사유	근거법령
목동 237-45번지 일대 목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(위원장 임종완)	목동 237-45번지 일대(19,668.1)	2006.10.30. (변경승인 2011.07.15.)	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해산 동의	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

2.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4.02.13.

3. 취소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

4.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

- 「행정심판법」 및 「행정소송법」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-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과(☎02-2094-21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